

한국 가족의 전환기적 특성과 가족정책

Characteristics of Transitional Period of Korean Family and Family Policy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 수 이 승 미*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 수 송 혜 림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전공

부 교 수 이 완 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부 교 수 성 미 애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 교 수 진 미 정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이 현 아**

Dep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

Professor : Lee, Seung-Mie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 of Ulsan

Professor : Song, Hye-Rim

Consumer and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

Associate Professor : Lee, Wan-Jung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Associate Professor : Sung, Miei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Chin, Mee-Jung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

Research Professor : Lee, Hyun-Ah

<Abstract>

Since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came into effect in 2005, family policy has become a primary field of social policy, and 'famil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keyword for solving Korean society's various phenomena and problems. In order to seek practical plans for reforming social policy through family policy, this thesis has analyzed the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families in relation to where Korean families currently stand and the situation they are facing. This thesis has also reviewed the content of family policy in the master plan of healthy families, the starting point of the actual family policy, and other related policies. It also has analyzed the key content of child care support policy. From these various analyses and discussions, this thesis has emphasized "family care" as the keyword of family policy, family effect analysis as the means of reinforcing family perspective, and family integrity for policy effectiveness.

▲주요어(Key Words) : 한국가족(Korean family), 전환기(transitional period), 가족정책(family policy), 사회정책(social policy), 가족돌봄(family care)

* 주 저 자 : 이승미(E-mail : smlee21@hanmail.net)

** 교신저자 : 이현아(E-mail : leehyun@snu.ac.kr)

I. 서론

현재 한국 가족은 급격한 한국사회의 변동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세계 최저의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다문화가족의 증가, 다양한 가족의 확대와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만혼과 이혼의 증가 등이 가족관련 현상의 대표적 징표들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가족의 기능 역시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변화하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족관련 현상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학술적 관심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책영역으로 따지면 별도의 가족정책 뿐 아니라 인구정책, 복지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농업(농민)정책, 여성·아동·청소년·노인정책 등에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장경섭, 2011). 이러한 관심의 증폭은 여전히 한국인에게 "가족"은 삶의 근원이자 행복의 원천으로 인식하면서도 그와 대비되는 현실적 현상이 광범위하게 교차함으로써 과연 '우리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과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다. 즉 최근 가족에 대한 정책적, 학술적, 사회적 관심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더욱 강화되는 것은 가족중심적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한 시도와 노력들이 최근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사회정책의 다양한 모색과 맞물려 사회경제적 개혁의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경섭(2011)은 가족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책적, 사회적, 학술적 노력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으로서 '사회재생산(social reproduction)' 체제의 심각한 교란과 붕괴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압축성 근대성이 가족 중심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사회재생산 주체로서의 한국 가족은 엄청난 성취의 이면에 심각한 '기능적 과부하(functional overloading)'를 겪어야 했고, 최근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 수많은 한국 가족은 한편으로 사회재생산의 물질 기반 교란을 겪으며, 다른 한편으로 오히려 사회재생산 부담의 확대에 직면하는 곤란에 처하게 되었다. 즉 한국의 위험사회 증후군들이 집중적으로 가족에 체화됨으로서 일종의 '위험가족(위험에 처한 가족)' 시대가 전개된다고 진단하면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복지국가 확립에 관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서 사회재생산을 둘러싼 가족-국가 분업체계의 근본적 재편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장경섭, 2011). 한편 사회정책은 왜 가족정책을 필요로 하는가에 관한 논의(윤홍식, 2011)에 의하면 산업사회의 주요 특징인 완전고용, 남성생계부양자, 제조업 중심의 대량생산 등 복지국가의 전통적 전제들이 해체·약화되고 있는 현재 우리사회를 '후기산업사회'로 규정

하고, 국가-시장(노동)-가족의 3각 구도 속에서 한국사회 시민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은 '탈상품화로의 이행'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탈상품화, 탈상품화-가족화, 가족화-탈가족화, 탈가족화-상품화라는 각각의 이행단계 모두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사회정책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전망은 인구학적 변화(가족관련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토대로 하여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 즉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의 위험이 공존하며, 이러한 중층적 위험이 계층과 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실존적 다양성에 기반 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윤홍식, 2011) 사회정책의 핵심 연결고리로서의 가족정책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거시적 변동과 구조적 맥락 속에서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성에 초점을 둔 다양한 논의는 한국사회의 전환기적 특성 하에서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며, 가족을 위해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고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 가족의 전환기적 특성은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가족정책 및 관련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봄으로서 가족정책의 향후방향에 관해 성찰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거시적 변동과 구조적 맥락 속에서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한국사회의 전환기적 특성과 가족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한국가족의 전환기적 특성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현재 가족정책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마지막으로 향후 가족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마무리한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문헌연구법에 의거하여 한국가족의 전환기적 특성과 가족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가족의 전환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0년 이루어진 제2차 가족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였고, 가족 관련 저서와 논문들을 분석의 근거자료로 사용하였다. 현재 가족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계획과 함께 사회보장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 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등 가족정책과 연관성이 큰 정책의 기본계획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외 가족정책과 관련된 논문이나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하였다.

III. 한국 가족의 전환기적 특성

먼저 인구학적 변화 속에서 한국 가족의 변화와 그 특성을 정리한 다음,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강조한바 한국 가족의 도구주의와 이중가치체계를 통해 한국 가족의 전환기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인구학적 변화와 가족 문제

한국 가족의 변화는 인구학적 지표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고령화, 저출산, 다양화, 다문화 현상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지표는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가족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 가족의 인구학적 변화와 가족문제는 크게 노인돌봄의 탈가족화, 자녀돌봄의 탈가족화 그리고 다양화와 사회적 통합이라는 세 가지 이슈를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1)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

먼저,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현상은 노인 돌봄 문제와 장기화된 가족관계의 질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개인주의에 입각해서 자기 부양(self support)을 강조하는 미국이나, 국가 차원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북유럽과는 달리 한국 가족은 자녀, 특히 장남과 장남 며느리로부터 노후를 보장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유교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 제2차 가족실태조사 보고서(여성가족부, 2010)에 따르면, 연령에 상관없이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데, 이는 자녀의 부모부양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인 태도는 실제 현상과 일치하지 않아 노인 부양이라는 맥락에서 가족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Cho, 2006; Kim, 2007; Suh & Chun, 2009; Kim, Park, & Kim, 2010)에 따르면, 기혼자녀세대는 부모가 연로해지거나 건강이 나빠질 경우에 예상되는 동거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며, 돌봄 노동시간이 길수록 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돌봄을 맡고 있는 여성의 욕구와 노인요양보장정책을 살펴본 연구(Park, 2007)에서는 돌봄을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가족 수발자들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부양의 책임감에 기초하여 노인 돌봄이 이루어질 때, 돌봄 노동의 특성인 관계성 그리고 돌봄 기간의 장기화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돌봄 공백과 관계의 질 악화를 초래하기 쉽다. 즉 노부모에 대해 최소한의 기능적인 돌봄은 이루어지겠지만, 고령화로 인해 관계를 지속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는 맥락에서는 돌봄을 둘러싼 애정, 존중 등의 상호작용은 이루어지기 힘들며 노부모-성인자녀 간 관계의 질을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 돌봄을 둘러싼 가족 내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노인 돌봄의 기능을 가족 밖으로 이양하는 탈가족화를 고려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과 후, 이용자의 경험과 주관적 해석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Shin, 2010)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전에는 노인과 가족구성원들 모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이해받지 못하는 소통 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게 된 시간적 여유나 신체적, 정서적 돌봄 욕구의 충족 덕분에, 노인과 가족구성원은 자신들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내면의 분노를 완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노인 돌봄노동시간 및 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Cho, 2006; Kim, 2007; Suh & Chun, 2009; Kim, et al., 2010)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족 돌봄자의 잉여시간이 확보되어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높아지며, 이러한 가족 돌봄자의 여가활동 참여는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관계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Kim & Yoo, 2009)가 있으며, 가족관계 중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자녀와의 접촉 빈도가 성공적 노화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Yoon & Yoo, 2006) 그리고 요양보호사와 노인은 유사가족적 친밀성을 경험하면서 노인이 갖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대체하고 있다는 결과(Shin, 2010) 등을 볼 때, 노인 돌봄을 둘러싼 탈가족화 과정에서도 노부모-성인자녀관계의 질이 저해되지 않도록 민감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자녀 돌봄의 탈가족화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 가족은 자녀 돌봄 자체를 아주 어려운 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은 출산을 더 이상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맞아야 하는 과정인 '도전'으로 보고 있으며(Kwon, et al., 2011),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서도 이상적인 자녀수로 생각하는 자녀수와 상관없이 실제 1명을 출산한 응답자의 약 80%가 향후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을 보면(여성

가족부, 2010), 자녀 돌봄을 힘든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관과 관련하여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반면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다' 라는 부정적 인식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조사 결과를 보면(여성가족부, 2010), 한 개인이나 개별 가족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자녀 돌봄 문제를 출산 기피라는 전략으로 해결한 결과가 곧 저출산 현상과 맞아맞아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더라도 육아나 가사 등의 가정 일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가정성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출산을 기피한다는 분석(Kim, 2010b)처럼, 저출산 현상은 단시간에 해결되기 힘든 우리 사회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정부는 자녀 돌봄의 탈가족화를 강조하면서 보육시설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 노동이 갖는 관계성이나 부모 됨의 동기에서 본다면, 자녀 돌봄 문제를 단순히 부모의 노동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관점에 입각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더욱 통합적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녀 돌봄에 대한 탈가족화를 고려할 때는 부모의 노동권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모권, 가족의 가족생활권, 아동의 인권 등과의 조화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다양화와 사회적 통합

한국 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 이중적 함의에 관한 연구(Kim, 2008)에서는, 가족의 구성에 있어 개인의 가치관과 취향에 따른 자율적 선택권이 보편적으로 수용됨에 따라 가족의 형태적 다양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다양한 가족이 사회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여성의 이혼과 빈곤을 살펴본 연구(Kim, Byun, & Yoon, 2008; Lee, 2008)를 보면, 이혼 후 여성들은 불안정한 주변부 부문에 집중 고용됨으로써 빈곤의 위협에 쉽게 노출되고, 가족해체를 경험한 남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삶의 질 수준은 모두 열악해진다(Park & Lee, 2010). 또한 이혼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가족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성차별적 노동구조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빈곤이 심각한 문제로 도출되고 있다. 한부모 가족 정책을 국제 간 비교한 연구(Kang, 2009)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정책은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잔여적 복지정책 기조를 가지기 때문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 여성의 경우 모성 역할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모성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노동자로서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는 삶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어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 가정생활 모두에서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Song, 2006; Sung & Chin, 2009).

한편, 현재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를 양육하는 조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양육을 받는 손자녀 모두 심각한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09, 2010). 미성년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실태와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을 살펴본 연구(Choi, 2006)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주로 공적 지지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신체 건강에 문제를 느끼고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부모가 인식하는 손자녀 양육을 둘러싼 부정적 정서(예: 수치심, 부끄러움 등)는 심적 위축과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손자녀의 학습지원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다(Seo & Kim, 2009). 그리고 조부모의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는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Lee, & Lim, 2009).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의 빠른 증가는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세계화 추세로 인해 국제 결혼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외국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의 가족이나 친척의 연쇄 이민이나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상봉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은 증가할 것이다(옥선화 등, 2011).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다문화 현상에 대한 수용 및 다문화 가족과의 사회적 통합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타성을 보이고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민감도를 살펴본 연구(Kim, 2010a)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 한국인들은 국제결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폐쇄적이며,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동정심을 표현하면서도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하게 인식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한국인들은 결혼이주 여성이 차별받는다고 인식하면서도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비교적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고려되는 대학생들조차도 가족주의에 입각한 결혼관, 인종적 편견, 이중적 차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Yang, 2008). 이러한 현실로 인해 결혼 이민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한국인 이웃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한국에 먼저 정착한 모국의 결혼이주 여성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Kye, Kang, & Chung, 2009; Kim & Un, 2007).

특히 보육시설이나 학교 현장 등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학습하는 것은 이후 사회적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어린이집에서도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실시하지 않으며,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Hyun & Rah, 2009). 교육 현장에서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 경험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 및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Kim, Won, & Choi, 2011)으로 나타나는 등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대전제와는 무관하게 현실생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다양해지면서 삶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나, 실제 생활에서 이러한 다양성이 수용되어 차별 없이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관념적인 수준에서의 인식과 실생활에서의 통합이 일치될 수 있도록 의식 차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2. 미시적 맥락에서 보이는 도구주의와 이중가치체계

한국 가족의 변화는 단지 인구학적 구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하는 변화는 가족과 관련된 규범, 의미부여, 동기와 같이 미시적 맥락에서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가치 체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곧 가족관계의 도구화 그리고 이중가치체계를 의미한다.

(1) 가족관계의 도구화

한국 가족의 경우 개인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가족주의 가치가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표면적인 변화 조짐과는 무관하게 삶의 기저에 작용하면서 이중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들(이광자, 1988; 장경섭, 1994; 장현섭, 1994; Cho, 1997; Lee, 1999; Ok et al., 2000; 이동원 등, 2002; Han & Yoon, 2004; Sung, 2006)에 따르면, 한국 가족은 표면적으로는 부계 가부장제 가족 및 친족 구조가 해체되면서 부계 가족의 원리는 약화되고 부부 중심의 핵가족 이념이 강화되는 양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도 부계 가부장적 가족 및 친족 구조가 해체되는 본질적인 변화를 통한 적극적인 재구성이 아니라 가족 및 친족 구조의 범위와 기능의 축소라는 소극적인 재구성(옥선화 등, 2000)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한국 가족은 근대적인 구조와 전통적인 구조가 혼재된 중층적인 구조 속에서 가족 관계 내 갈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한국 가족의 가족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결합되어 부동산 투기, 부정 입학 등에서 보듯이 가족 단위의 극도의 반(反)공동체적 이기주의를 야기하기도 한 도구적 가족주의(신용하, 장경섭, 1996) 형태로 나타나면서 사회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도구적 가족주의는 1997년에 시작된 IMF 관리체제나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 심화된 측면이 있다. 즉 두 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람들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가족만이 생존의 안전망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하버마스가 말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현상, 즉 물질적 생산을 하는 '체계'와 대응되는 개념인 '생활세계'의 행위양식 논리에까지 '체계'의 작동 논리가 침투하게 되었다(김창호, 1996; 심영희, 1979)고 할 수 있다.

제2차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0)에서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67.6%), 돈(47.3%), 일(24.4%)이 자녀(18.2%), 배우자(14.9%), 가정생활(12.6%)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자본주의의 체제 논리가 생활세계에도 침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본인을 제외한 가족원이나 타인은 오직 본인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등 인간을 도구적, 수단적 목적에 부합하는 존재로 평가하는 경향도 나타나게 되었다(Choi & Sung, 2011).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자녀의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한국 가족의 청소년 자녀 사회화 연구(Sohn, 2009)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바람이나 요구에 상관없이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가 크며 공부나 성적을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학업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자녀 사회화의 내용도 다원주의적 가치에 기초하기 보다는 학업 중심의 경쟁적 사회분위기를 수용하므로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적 태도를 당연시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자녀교육 태도를 비교한 연구(Sohn, 2010)에서도 한국 엄마들은 '교육매니저'로서의 정보수집과 자녀의 학습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본어머니에 비해서 인성교육과 생활교육에 덜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이러한 도구적인 가족관계의 또 다른 전형으로 기러기 가족을 들 수 있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가족 형태로, Choi(2006)에 따르면 기러기가족은 부부의 관계성보다는 도구성과 계획성에 의하여 분거가 채택되며, 가족 이외에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한국 사회에서 특히 자녀의 생존과 성공을 위한 생활양식으로서 부부의 약화된 정서성과 가족의 도구적 특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가족은 가족주의로 대표되는 가족 간 유대를 중심으로 응집성이 높은 가족이라고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에는 정서성보다 도구성이 관계를 작동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가족 및 친족 간의 접촉 빈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상을 국제 비교적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Jeong, 2007)에 따르면, 한국의 대면적 친족 접촉빈도가 조사대상국 중 최 하위권에 있었으며, 정서적 지원보다는 도구적 지원의 대상으로 작동하는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중가치체제

이중가치체제란 동일한 상황에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의 규범이 공존하면서 행위자의 선택에 따라 규범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최봉영, 1994). 이는 규범 체계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과도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이중적 규범체제가 지속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신수진·최준식, 2002, 16). 이중가치체제는 어떤 일관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수준에서 편의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하면서 결국은 가족 간 갈등이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Sung, 2006). 대표적인 예가 자녀 간 균분 상속을 규정하는 민법 조항은 지지하면서도 여전히 부모 부양 및 제사의 책임은 장남이 져야 한다는 자녀들의 인식이나 딸은 본인처럼 가족에게 희생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되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처럼 헌신적으로 내조하기를 바라는 시어머니의 인식처럼 상반된 잣대가 아무런 갈등 없이 이중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도덕, 정치, 경제의 연관에서 본 효도법 담론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Park, 2007)에 따르면, 한편에서는 한국사회의 발전과 복지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효 가치의 복원과 제도화를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병의 근원으로서 그 가치를 비판하기도 하는 등 이중가치체제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에 대한 진단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Sung, 2006)에 따르면, 현재 한국 가족에서는 전통사회에서처럼 출가외인 사상이 여성으로 하여금 본가와외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과도기로서, 남자 형제와 의무를 분담하지는 않지만 여성들도 자신의 본가와외는 친밀감을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한국 가족에서 보이는 양계화 현상의 핵심적 내용은 실제적 필요에 의한 사회적 지원망으로서 아내의 친족망 활용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부계제가 여성 종속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양계제 역시 도구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면 여성역할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처럼 한국 가족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맥락에서 돌봄을 둘러싼 갈등 극복 및 돌봄에서의 관계성 회복, 성, 세대, 지역, 문화 간 통합 문제, 가족주의와 개인주의의 중층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존재적 의미 회복, 이중가치체제에서 보이는 모순 극복의 과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과제는 이러한 이중가치체제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나 돌봄의 공백 문제 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며, 돌봄의 관계성과 가족 가치의 회복을 시도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 가족의 전환기적 특성을 인구학적 변화를 통해 파악하고, 도구주의와 이중가치체제를 분석하였다.

한국 가족의 인구학적 변화와 가족문제는 노인돌봄의 탈가족화, 자녀돌봄의 탈가족화 그리고 다양화와 사회적 통합이라는 세 가지 이슈를 통해 분석하였다. 노인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탈가족화가 거론되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부모-성인자녀관계의 질에 대한 민감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탈가족화를 중심으로 보육시설의 확대만을 거론하는 한계를 비판하면서, 통합적인 패러다임 즉 부모의 노동권과 함께 부모권, 가족의 가족생활권, 아동의 인권 등과의 조화 속에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인식과 실태 간의 일치를 위한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 가족의 변화는 단지 인구학적 구조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치체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가족관계의 도구화 그리고 이중가치체제 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 가족은 가족주의로 대표되는 가족 간 유대를 특성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에는 정서성보다 도구성이 관계를 작동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가족주의와 개인주의의 중층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이중가치체제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책적 차원에서 돌봄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 돌봄의 공백 등에 보다 관심을 가져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돌봄의 관계성과 가족 가치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III. 가족정책의 분석과 진단

1. 가족정책 진단의 기준

가족정책은 문제가족에 대한 문제해결적 처우라기보다는 예방적 접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제도적, 환경적,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은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사항으로서 일반적, 통일적, 총합적 관점에서 가족생활의 유지 강화를 도모하는 여러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정책은 개별 가족구성원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가족을 의미하는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조희금 등, 2010).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가족문제에 개입한 것은 1960~1970년대의 산아제한을 위한 가족계획 외에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보건 의료,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가족이 아닌 개별 대상에 초점을 둔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또한 '선가정 후사회' 기조에 따라 가정이 먼저 문제해결을 하고, 그 이후 문제가 발생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아주 소극적인 가족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가족해체, 저출산, 여성취업 활성화와 돌봄의 공백 등 가족문제 그리고 소위 신사회위험이 등장하면서 가족에 대한 관심과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어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로써 가족정책이 명시적인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가족문제를 사적 영역으로 보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족을 정책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은 우리 나라 가족정책 및 사회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족정책은 문제가족에 대한 사후치료적 접근 뿐 아니라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가족의 건강성과 역량강화를 더 주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족정책은 문제가족을 위한 사후치료에서부터 보편적 가족을 위한 사전예방적 관점을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책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립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방향과 정책의 범주를 처음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가족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가족정책의 비전으로, ① 가족돌봄의 사회화, ② 직장·가정의 양립, ③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④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⑤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⑥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의 6개 영역으로 정책범주를 규정하였으며, 이로써 가족정책은 하나의 사회정책분야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가족정책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조희금 등, 2011).

이후 수립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사회’라는 정책비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정과 사회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특징은 보편적 가족의 가족위기 예방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 가족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가족가치의 확산을 주요과제로 부각시키고, 육아의 주체로서 ‘가족-지역사회-국가’의 협력을 강조하였다는 데 있다.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가족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명시적으로 가족정책의 영역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정책의 영역과 주체를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로 확대하고, 이들 간의 상호책임성과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으로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출발하였다고 본다면,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영역과 과제를 가족정책 진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한 가족정책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한 단위로서의 가족을 고려하고,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가족의 건강성과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 모든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지향성에 근거해서는 가족을 단위로, 가족과 관련된, 가족을 위해 행해지는 모든 정책을 가족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것이 광의의 가족정책이 된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을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가족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보편적 가족정책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의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핵심적 가족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분석 및 진단하고자 하며, 그 다음에 가족정책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갖는 관련 정책들-사회보장 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 기본계획, 그리고 가족구성원 개인에 초점을 둔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 마지막으로 가족의 주요 기능을 부양, 양육, 돌봄으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내용으로서의 가족정책을 분석 및 진단해보고자 한다.

2. 건강가정기본계획 분석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함께 가는 가족)이 수립됨으로써 명시적 가족정책의 실제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바라본 가족정책 추진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서 가족의 변화, 가족정책의 새로운 요구 그리고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첫째, 가족의 변화는 주지하는 바, 가족구조 및 형태의 변화, 가족기능의 변화,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수치와 증거들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족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족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이다. 둘째, 가족정책의 새로운 요구는 가족정책에 영향을 미친 정책 환경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맞벌이 모델로의 전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거시-미시 정책의 조화와 같은 요인들이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가족정책을 요구한다는 분석이다. 셋째,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가족의 변화에 대응한 보편적 가족정책의 미흡, 성인지적 가족정책의 기초는 마련되었으나 제도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미성숙,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대한 대응 미흡과 예방적 가족정책의 부재, 범정부적인 가족정책 조정체계 부재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서는 역동적인 가족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보편화와 예방성,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같은 지향성이 부각된다.

또한 가족정책의 기본방향을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민주적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 존중,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조정 및 가족지원체계의 강화로 두고 있다. 즉 가족 내부의 관계부터 사회적 환경 그

리고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 등에서 그 기본 방향을 도출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평등과 행복이 주된 키워드로 등장한다. 비전에서의 평등은 정책목표에서 남녀간·세대간 조화로 연결되며, 이는 또한 정책과제 직장·가정의 양립,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새로운 가족관계와 문화 조성 등에서 구체화된다. 또한 돌봄에 대한 지원, 일·가정 양립, 다양한 가정의 사회통합,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건강한 가족문화 그리고 이러한 가족 지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나아가 행복한 사회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연계된다. 더불어, '가족'과 '가족구성원'을 동시에 부각시킴으로써 한 단위로서의 가족의 삶의 질 그리고 그 안의 구성원들 각각의 행복을 조화롭게 다룬다는 시각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정책 환경과 특성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그동안의 잔여적, 사후적 가족정책이 보편성과 예방성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출발하고 이를 통해 가족정책의 실체를 가시화시켜 명시적 가족정책으로 자리매김되는 중요한 계기인 동시에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돌봄의 사회화는 개별가정의 돌봄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사회가 적극적으로 분담한다는 차원이며, 따라서 '선가족-후사회' 관점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는 남성의 가족생활참여,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등의 아젠다와 결합되어 최근의 맞벌이가족체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통적인 돌봄방식, 즉 '가족주의에 기반한 돌봄노동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근래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제2정책과제),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역할회복을,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각각의 취약한 면을 먼저 보완하고 이로써 궁극적으로 남녀의 일-가정 양립에 이르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송혜림, 2012).

모든 정책은 제도적 서비스로 전환되며 이는 정책이용자에게 공급된다는 차원에서 전달체계는 정책 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기본계획에서는 그동안 여러 부처의 정책에 분산되어 있는 가족정책과제의 총괄과 조정을 위한 체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가족영향평가제도 도입의 검토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의 가족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 가족영향평가제도는 제 2차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미 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에 대한 고려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11년도에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연구(조희금 등, 2011)를 보면, 제 1 정책과제

인 가족돌봄의 사회화와 관련하여 노인돌봄을 포함 대부분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 2 정책과제인 직장·가정 양립의 경우 대체적으로 법제도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고 서비스 역시 일정한 수준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제 3영역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에서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양한 소외가족 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서 보통-우수 사이로 평가되었다. 네 번째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과제는 법률 제정을 통한 정책적 기반 확보,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의 긍정적 성과도 있으나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의 경우에는 법적 기반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그리고 안전한 가족생활환경 조성은 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과제는 법적 조건의 마련과 정비 등을 통해 기반을 확보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어 계획을 원활히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섯 번째,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은 가족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전달체계의 통합조정 및 개선의 내용이 부각되는데,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가족영향평가제도의 도입, 건강가정정책위원회 운영실적, 가족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의 차원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논의가 진행되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강화가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진단되었다. 이 영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인프라 확충과 내실화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족정책의 총괄조정체계 정비 실적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희금 등, 2011).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이어 2011년 제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가족행복 더하기)이 수립되었는데, 제 2차 기본계획이 토대한 가족정책의 기능과 위상은 신사회 위협에 대한 해법기제로서 가족정책,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선제적인 성장 전략,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다원화된 사회의 효과적인 통합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돌봄의 공백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신사회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관련하여 단지 인구정책이 아닌 통합적 가족정책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통합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표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관계부처합동, 2011:34).

제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특징은 보편적 가족의 위기 예방 및 가족 건강성 증진, 역량 강화 차원에서 가족가치의 확산을 주요 과제로 부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육아의 주체로써의 '가족-지역사회-국가'의 협력을 강조하여,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강화, 다양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부모의 육아역량 강화, 지역 공동체 활용 등을 통해 가족의 비금전적 육아 부담 완화, 가정내 보육 서비스 강화라는 방향에 맞춘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부부처 업무 개편에 따라 청소년정책업무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청소년 등 정책과의 연계는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업무로 되어 있는 보육 등과 관련된 과제는 축소하는 방식으로의 조정을 발견할 수 있다(관계부처합동, 2011:39).

제 1차 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제 2차 기본계획은 보육이나 노인과 관련된 과제를 대폭 축소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이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던 1차 기본계획에 비해 2차 기본계획에서는 여러 정책과제에 그 내용이 분산되어 있다.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제 1차 기본계획에서의 방향이 '사회화'에 놓여 있었다면 제 2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화 그리고 부모역할지원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어, 자녀돌봄 지원의 방향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의 전환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차 기본계획을 통해 가족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면, 2차 단계에서는 그 효율화 그리고 전문화 차원에서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직장·가정 양립을 독자적인 정책과제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의 차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저출산의 원인을 직장/가정 양립문제, 가부장적 가족문화, 자녀돌봄비용 과다 등 가정생활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저출산정책을 단지 인구정책이 아닌 통합적 가족정책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송혜림, 2012). 그러나 1차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가족영향평가제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해야 할 단계임에도 정책 과제에서 가족영향평가제도의 내용이 빠져 있어 가족정책 추진의 조정과 총괄적인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3. 가족정책 유관정책에서의 내용 분석

(1)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을 아우르면서 저출산, 고령화, 복지, 사회자본, 다문화, 소득분배 등 다양한 아젠다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보장 장기 발전 방향은 현재(2009-2013) 세 번째 단계가 추진 중이다. 예방형·보편형·맞춤형의 복지는 현재 전환기에 있는 한국의 사회정책의 주된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책과제에 있어서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은 돌봄에 대한 국가사회적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가족정책과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다.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은 다양한(취약한) 가족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예방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주된 방향은 문제 해결에 놓여져

있다고 할 것이다.

사회보장 장기 발전 방향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되어 자녀돌봄지원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녀돌봄지원과 관련하여 여성은 임신·출산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제고 등의 세부과제가 포함되며,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에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활성화, 민간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강화 등의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09:13-15). 또한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 사업 정비 및 확대를 추진하는 바, 빈곤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돌봄·교육·체험 등 통합 서비스 제공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및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 후 보호·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08:17).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 양육·성장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 구축이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가족상담 등 사례관리 강화 등의 정책과제가 포함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09:24-26).

이와 같이 보편적인 사회보장의 맥락에서 가족정책은 저출산과 연계되어 자녀돌봄, 일·가정 양립 등의 맥락에서 접근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돌봄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3차 사회보장 장기 발전방향 추진에 따른 성과지표를 보면 전체 16개 지표 중 가족정책과 관련된 항목은 가족친화 인증기업 수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이용률 등에 국한되어 있어 한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개인화', '다문화화', '복지시대'와 같은 21세기적 핵심 화두들의 기본 대상으로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학술적 관심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정책영역으로 따지면 별도의 가족정책뿐 아니라 인구정책, 복지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농업(농민)정책, 여성·아동·노인 정책 등에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영역들이 사회정책 범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임을 고려하면(장경섭, 2011:1), 제반 사회정책에서 가족정책은 더욱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하며, 보편적인 사회보장 체계에서도 가족의 역량 강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보다 다양한 아젠다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은 현재 네 번째 단계를 추진 중이다. 그 추진 배경은 제 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시, 출산비용의 사회화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제 4차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향후 5년(08년-12년)은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저출산·고령사회 도래로 여성 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라는 맥락에서 남녀고용평등을 산업현장에 정착시키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은 주로 일하는 여성에 중심으로 노동현장에서의 고용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2007년도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가족 및 가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 3차 기본계획에서 모성보호의 내실화 및 사회분담 확대, 직장가정의 양립 지원체계의 보강과 같은 정책과제가 있었고, 4차 기본계획에 이르러 일하는 여성의 육아 그리고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 정착 등으로 연계되면서 보다 구체화, 보편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기본계획은 노동시장과 근로현장을 중심으로 근무형태의 유연화, 다양화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토대를 견고히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역시 여성취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이른 바 가족관점(family perspective)에 따른 설계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일하는 근로자를 타겟으로 하는 노동정책이 어떻게 가족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가족정책 주무부처의 조정 기능, 가족영향평가제도를 통한 체계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3)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제 1차(1998-2002), 제 2차(2003-2007)를 거치면서 양성평등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통해 기반을 확보하였고, 현재(2008-2012) 제 3차 기본계획이 추진 중이다. 제 3차 기본계획은 가족기능 변화에 따른 돌봄의 사회화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서비스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보장과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가족간호 휴직제도 도입 등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들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 제정(‘07. 12)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기관들의 가족친화지수(ff)를 측정하여 일과 개인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직장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여성정책은 기본적으로 젠더관점에 토대하여 양성평등사회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내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성인 지적 시각에서 여성의 인권, 여성의 경제활동 등을 다루고 있다. 돌봄의 사회적 분담 정책과제는 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 남성의 육아 및 가사활동 참여,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등을 포함함으로써 주로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초점

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세부과제들은 건강가정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보다 부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정부는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85~87)」 이후 제1차에서 제4차에 이르는 범정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으며, 현재 '07년 말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08~12)」을 시행중에 있다(관계부처 합동, 2008, 제 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정보완판). 제 4차 기본계획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희망세상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4대 정책분야 86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환경 및 정책 진단에서 청소년의 역량개발 여건 취약, 가족의 기능약화 및 취약·위기청소년 증가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협하는 환경요인 증가 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바, 가족과 관련하여서는 핵가족화, 맞벌이가족 및 이혼가정 증가 등으로 가족 간 소통 및 유대감이 감소하여 자녀에 대한 가족의 보호·지지 기능 약화 등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08:12-14). 따라서 그 추진 방향에 있어 청소년이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가족과 같은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교육 등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시행수단의 마련, 촘촘한 사회안전망 조성, 맞춤형서비스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08:16).

제도적 기반을 위한 정책과제 외에 총 3개 과제영역을 두고 있는데, 비전에 있어서 가족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가족기능과 관련하여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가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부모교육 및 세대 간 이해증진 프로그램 강화, 가족상담 지원 강화, 가족 공유시간 확대여건 조성 등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부모교육 활성화와 아버지교육 등 부모교육 확대, 각 전달체계를 활용한 청소년 예비부모교육 실시, 가족상담 지원 강화, 찾아가는 가족관계 상담 및 가족캠프 운영, 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이나 유연근무제 확산, 정시퇴근 문화 정착,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한 가족 공유시간 확대여건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08:48-49).

2010년 1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 3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현재 청소년정책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 통합적이고도 포괄적인 가족정책 영역 안에서 청소년정책을 어떻게 조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점이 직면한 과제라 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에서 한 편으로는 교육정책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접근으로, 다른 한 편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서비스 운영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해 왔던 것에 비

추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권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가정의 돌봄기능, 부모역할 등의 요소가 정책적으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내용으로서의 가족정책 : 자녀양육지원 중심으로

가족, 여성, 아동 및 노인 등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서의 가족정책은 그동안 가족, 특히 주로 여성에 의해 무보수로 수행되어오던 돌봄 노동에 대한 정책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지원정책의 가장 핵심인 영유아보육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족지원정책의 변화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유아보육정책은 가정이 아니라 어린이집 형태의 기관에서, 가족이 아닌 보육 전문 인력이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외형적으로 탈가족화의 형태를 띤다. 하지만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가족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가족정책과 유리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보육정책은 복지논쟁의 출발점이 된 무상복지 시리즈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무상보육의 확대를 선언함으로써 이에 관한 다양한 논쟁이 뜨거운 시점이다. 이의 구체적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올해 초 전격 실시된 만 0-2세 무상보육정책은 우리 사회에 일대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 정책의 주된 내용은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국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 정책은 만 5세 무상교육/보육¹⁾과 함께 보편복지 실현의 한 초석이라 보인다. 사회정책에서의 보편주의란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대상을 일부 계층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중산층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에 대한 부담과 그 수혜를 연결시키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전병유, 2009:433). 제작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보편복지 구현과 관련하여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무상의료 실현 등이 세부정책과제로 논의되어 왔고, 이 와중에 무상보육이 보편복지 구현의 비교적 용이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여겨진 것 같다. 더구나 만 0-2세 무상보육은 여성의 출산 및 영아기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정책입안자와 결정자들로부터 쉽게 호응을 얻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영아 무상보육이 실시되자마자 2012년 3월 신학기를 앞두고 보육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도 영아를 어린이집에 등록시키고자 하여 공급대비 수요

가 현격히 부족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영아를 집에서 돌보고자 하는 가정의 경우, 정부의 양육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박탈감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토로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 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 등 영아기 보육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정은 오히려 어린이집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어느 영아나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종일반으로 돌봐야 하는 취업모의 영아보다는 반일반만 다니고 귀가를 희망하는 전업모 등의 영아를 돌보는 것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상보육인데 정작 부모의 입장에서는 유상보육인 상황이다. 즉 정부는 무상보육이 실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모는 여전히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추가비용, 물품(짜휴지 등)을 납부해야 한다. 부모로서는 절반의 무상일 뿐인 셈이다.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등은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보육료, 즉 표준보육 단가가 비현실적으로 낮아 정부지원료 만으로는 실제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가 없으며, 이에 따라 추가 비용 및 물품을 수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집단 휴원을 결의하고, 보건복지부등을 압박하여 현재 추가비용 수납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수용된 상태이다.

더구나 정부는 올해 무상보육을 시도하면서 보육료 및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인건비 수준을 인상하지 않게 책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이직 및 퇴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보육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이상의 문제점을 고려해볼 때, 영유아기 자녀양육에 대한 주요 책임과 돌봄 노동 제공방식 및 이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수렴해 내고, 관련 시장서비스의 활성화를 어떤 방향으로 구축할 것인가에 관해 심도 깊은 분석과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

(1) 가정 밖에서 제3자에 의해

여성의 평등권 신장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성의 무급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유급 노동으로의 접근권을 통한 보편적인 시민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관점을 견지할 경우 영유아 양육을 위한 돌봄 노동은 가정 내에서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현금급여의 방식보다는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서 제 3자에 의해 보육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가정 내의 여성은 전적인 육아 부담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현물급여 혹은 서비스급여가 효율적인 정책방향이 된다. 이 경우 국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즉 국가가 직접 이를 전달할 것인가, 일부 혹은 전부를 민간서비스 시장에 위임하고 비용보조를 중심으로

1) 만5세 누리과정 제도 도입은 2011년 5월에 발표되어 2012년 3월부터 적용 예정이었고, 만0-2세 무상보육제도는 2011년 12월 31일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전격 통과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두 제도 모두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만0-2세, 만5세 영유아는 전면무상보육을, 만3-4세 유아는 소득 및 자산에 따른 차등지원제에 의한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국가가 민간서비스 시장에 위임하여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시민의 정책수혜감은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영유아기의 발달특성을 고려할 때 부모나 주 보호자가 신뢰할만한 서비스의 질을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정책과정을 요한다.

한편, 가정 밖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가족정책은 자녀양육을 위해 일시적, 혹은 항구적으로 전업주부의 역할을 선택하였거나, 만족스러운 직업을 얻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전념하고 있는 비자발적 전업주부 집단에게는 불만족을 사기 쉽다. 이들은 어린이집을 통한 무상보육실시에 대해 당혹해하고 자신이 다른 대안을 포기하고 자녀를 위한 돌봄 노동에 전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나 대가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

(2) 가정에서 부모 등 전담자에 의해

여성의 노동권을 강조하는 입장과 달리, 남성과 여성이 각자 고유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여성이 남성과 같이 되어야만 남녀평등이 실현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성을 '남성'을 중심으로 왜곡시키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본다. 이를 영유아에 대한 돌봄 노동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에서 고려할 경우, 가족에 의해 수행되는 돌봄 노동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가족원에게 아동수당 등의 형태로 현금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내용이 된다.

가족의 돌봄 노동에 지급하는 현금 급여는 직접 영유아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나 아버지 외에도 현재 우리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조부모 등 친인척에 의한 양육 지원에도 사용될 수 있고, 친인척은 아니더라도 영유아의 부모가 고용한 개인 육아도우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다면 아동수당을 가정에 지원하는 가족정책은 영유아와 부모 및 가족에게 육아에 대한 효능감을 높여 줄 수 있으며, 정책수혜감과 만족감도 높여줄 수 있다. 하지만 현금급여를 가정에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할 경우 일부 부모가 현금급여를 본질적 목적 외의 다른 곳에 사용하는 폐단이 나타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모델은 우리 사회에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강화시키고, 여성의 성별분업 가치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제한점을 갖는다.

(3) 가정에서 영유아의 휴직한 부모에 의해

다른 대안으로는 영유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얻거나 육아휴직을 얻어 영유아기 자녀를 직접

돌보는 방법이 있다. 이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육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내용으로 꼽힌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부성 및 모성 보호를 더욱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가령,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배우자도 3일간의 출산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²⁾.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영유아기 자녀의 연령범위를 넓힘으로써 맞벌이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통해 동일 자녀에 대해 최장 2년까지의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³⁾. 이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⁴⁾, 이때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주 30시간 이내(고용노동부, 2008)가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한 직장인에 대하여는 이들이 원만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⁵⁾.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학 전 육아에 대한 육아지원을 위해 그 밖의 조치를 할 것도 규정되어 있다⁶⁾.

이상의 가족지원 정책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히 이용할 경우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주로 여성이 이용할 경우에는 여성의 양육자 역할을 여전히 강조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장지연, 2009:524).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를 이용하기조차 어렵다는 현실이다. 2006년 현재 여성의 경우 총 취업 여성의 30.9%,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44.5%만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남성의 경우 총 취업자 대비 41.6%, 임금근로자 대비 61.4%

- 2) 제18조2항(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 3)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4) 제19조2항(근로시간의 단축)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5) 제19조6항(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6) 제19조5항(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의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와 비교하여 낮은 수치로, 고용보험의 재원을 토대로 운용되고 있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여성 임금 근로자의 비율, 즉 고용보험 가입자가 절반 이하라는 것을 나타낸다(김영옥 등, 2007).

더욱이 여성 근로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 2006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42.7%였으며, 여성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54.8%와 32.7%였다(주재선, 2006). 2004년부터 일용근로자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었으나,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또 사업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상당수의 비정규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100만여 명에 이르는 일용직 여성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더욱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률이나 제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여성 근로자의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여성 근로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더욱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복직의 불안, 대체인력 부재, 회사 관행, 적은 급여 등으로 인해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여성노동연구소, 2006).

이상과 같이 가족정책의 진단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가족정책의 정의와 범주를 정리한 다음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족정책 진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가족정책 핵심 분야인 건강가정기본계획, 그리고 유관 분야 정책 및 자녀양육지원 정책을 대상으로 분석과 진단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가족정책이 문제해결에서 예방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가족정책 추진의 기반을 확보하였고 제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서는 가족정책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 중요한 몇 가지 성과를 강조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 장기 발전 방향,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여성정책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등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주요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가족정책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예방, 가족친화, 일-가정 양립, 돌봄 지원 등의 이슈가 동일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취업의 활성화로 인한 돌봄의 공백은 모든 사회정책분야가 이슈로 하는 신사회위험이라는 점에서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화 혹은 탈가족화 정책 대안이 갖는 강점

과 한계를 비교하여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 자녀의 인권과 가족생활권이 조화될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함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최근 복지선진국의 사회정책 및 가족정책의 기초가 그러하듯이, 가족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이후, 보편적 가족정책은 사회정책의 주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발전은 개인 보다 가족을 우선하는 한국사회의 가족중심주의적 특성에 기반할 뿐 아니라 최근 등장하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즉 저출산과 고령화,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등-에는 가족관련 변화양상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핵심 키워드로서, 특히 사회정책의 개혁의 실천적 방안을 가족정책에서 모색해보기 위해 전환기의 한국가족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가족정책의 정의와 범주를 토대로 가족정책 핵심 분야인 건강가정기본계획, 그리고 유관분야 정책 및 자녀양육지원 정책을 분석, 진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과 진단을 중심으로 향후 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논의점을 정리함으로써 결론 및 제언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사회정책 발전과의 관계에서의 가족정책 의미

최근 객관적 통계수치가 보여주는 가족관련 현상을 보면, 개인 보다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가족이 개인 행복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며, 가족은 소중하다는 인식과 달리 결혼과 가족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가족규모의 축소 뿐 아니라 가족 구성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인식과 현상의 괴리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현상의 대조적 교차는 가족의 중요성 감소에 의해서보다는 그 동안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가족이 감당해왔으며, 이러한 '가족기능의 과부하'가 상황적, 환경적 여건의 변화에 의해 한계적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해야 하는 국가사회는, 매일의 일상적 노동력재생산과 다음세대 노동력재생산 기능을 가족이 가장 일차적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가족을 사회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삼을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최근 들어 심각하게 교란되고 붕괴되는 '가족의 재생산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개입해 나갈 것인가의 문

제는 사회정책의 주요 핵심과제로 급부상될 수밖에 없다. 즉 가족정책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정책의 방향과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상호 발전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정책 방향 모색의 필요성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란되고 붕괴된 '가족 재생산 체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족정책의 중요한 화두이자 핵심내용이라면, 국가적 개입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고민은 가족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향후 가족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시도되고 이루어질 때, 한국 가족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족정책의 핵심적 내용을 가족의 돌봄기능으로 본다면, 가족에 관한 정책적 개입의 일차적 방향은 여성취업의 증가, 가족규모의 축소 등에 의한 가족의 돌봄공백 또는 돌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사회가 가족의 돌봄기능을 분담하고 사회화하는, 즉 탈가족화의 이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가족정책의 내용분석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돌봄의 사회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보육비 지원 확대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 그리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영유아보육정책을 근간으로 하되 돌봄의 사각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제 재가 파견서비스의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가족내 양성평등 구현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또한 친밀한 사회적 관계의 가장 기본이 부모자녀관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족정책에 관한 여성의 노동권 차원에서의 접근은 많은 부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구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기존의 소득을 대체해주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자원을 제공하는가-부모휴가제나 다양한 근로형태 등-의 문제가 가족정책의 또 다른 핵심내용이라는 점에서 가족정책의 방향은 '가족화'의 이행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즉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이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라는 점이다. 또한 여기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은 '가족화'의 이행이 여성 중심으로 전개되어서는 안되며, 남녀 모두 즉 부모의 부모권 확보,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가족생활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강조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환경과 여건 조성에 함께 주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를 위한 사회적 환경과 여건은 현재 매우 열악하며 이를 위한 개선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일 뿐 아니라 가족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이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인가 역시 매우 중요한 가족정책의 과제이다.

한편 한국 가족은 오랫동안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서구사회 보다 가족의 도구적 기능을 중심으로 작동해 왔으며, 이러한 도구적 가족주의의 결과로 '가족기능의 과부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족의 도구적·수단적 기능의 과부하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이 전개될 경우, 과연 한국 가족은 서구 사회처럼 가족관계의 정서적 기능에 집중하는 가족 모습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지에 관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노인 돌봄노동시간 및 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Cho, 2006; Kim, 2007; Suh & Chun, 2009; Kim, Park, & Kim, 2010)에 의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족 돌봄자의 잉여시간이 확보되어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높아지며, 이러한 가족 돌봄자의 여가활동 참여는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통해 돌봄스트레스 완화 뿐 아니라 부부관계의 개선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Lee & Kim, 2011)에서 가족돌봄의 사회화는 가족의 정서적 만족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조적으로 부모역할이나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가족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등의 노력이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의 돌봄기능을 사회화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돌봄서비스-특히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역시 유사가족적 친밀성을 경험하면서 자식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대체한다는 앞서의 지적에서처럼 돌봄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그리고 서비스 제공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가족정책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서비스 제공방식의 경우 현재와 같은 바우처방식은 개인별 서비스 지원으로 서비스 대상자들을 개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개별화된 관계 속에서의 서비스 제공방식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정책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식을 넘어서서 우리사회의 돌봄 서비스 제공방식이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호혜적 관계를 토대로 어떻게 선순환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고민과 성찰 역시 향후 함께 이루어져야 할 주요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사회적 관계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가족이며, 가족단위의 상호 헌신과 배려, 응집성과 신뢰 등의 가족내 관계의 속성이 가족 내로 간헐 경우 가족이기주의로 흘러 부정적 사회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속성이 가족을 넘어 사회, 좁은 범위에서의 지역사회내로 확대될 경우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자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와 관련하

여 한국 가족의 특성을 토대로 다각도의 고민과 통합적 관점의 견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가족과 국가의 상호 소통을 위한 가족정책의 방향 모색

복지국가의 성격과 개편방향에 관한 기본적 논의는 국가-시장-가족의 3각구도 하에서 국가와 시장이 가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개입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가족은 복지국가의 성격에 따라 국가나 시장의 역할이 다르며, 이러한 상황적 맥락 속에서 가족에 대한 개입방식이 결정됨으로서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가족은 가족의 필요를 주체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정책대상으로 타자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정책-좁은 범위의 가족정책으로부터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정책까지-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쌍방향적 피드백 체계가 필요하다.

가족 관점(family perspective)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가족영향평가(Family Impact Analysis)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족영향평가(Family Impact Analysis)는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까? Bogenschneider(2002)는 가족영향평가(FIA)란 정책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가족의 안정성, 가족관계, 가족구성원의 책임수행 능력에 미치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Zimmerman(2001)에 의하면 가족영향평가(FIA)는 평가대상 정책이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돕는 정책과정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정부정책이 가족과 가족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인식을 확대시켜 가족관점에서의 정책실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라 하였다(조희금 등,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선행연구의 개념정의를 토대로 가족정책 성과평가 및 가족정책 과제개발연구(조희금 등, 2011)에서는 가족영향평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정책 및 법·제도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가족친화적 정책추진을 도모하는 정책도구로 정의하였다. 즉, 가족영향평가는 가족관점(family perspective)에서 정책의 효과를 의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가족관점의 정책수립과 실행의 준거의 틀을 제시해 주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영향평가를 통해서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가족정책 운영의 체계성과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목표지향적, 성과지향적, 가치중심적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조희금 등, 2011). 따라서 가족영향평가제도는 정책의 대상으로 타자화된 가족을 넘어 서서 가족의 입장에서, 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를 보다 가족친화적 사회로, 그리고 다양한 국가정책이 가족의 입장에서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REFERENCE

- 고용노동부(2008). 제 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 계획.
- 관계부처합동(2006).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 관계부처합동(2007).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2008).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수정보완판).
- 관계부처합동(2009). 제3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 관계부처합동(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 김영옥·최숙희·전기택·이선행(2007).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노동부.
- 김창호(1996). 하버마스의 체계와 생활세계:이원적 전략의 이론적 의의. 김재현, 김창호, 박영도, 선우현, 양은덕, 이삼열. 하버마스의 사상:주요주제와 쟁점들(pp. 177-200). 서울: 나남.
- 송혜림(2012). 일과 생활의 조화: 정책에서 생활로. 2012 대한 가정학회 제65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50.
- 신수진·최준식(2002). **현대 한국사회의 이중가치체계**. 서울: 집문당.
- 심혜희(1979). 비판이론의 사회학적 의미: 하버마스의 왜곡된 의사소통 이론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3(3), 105-121.
- 신용하·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 문화**. 서울: 지식산업사.
- 여성가족부(2010). **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 옥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용·한경혜(2000).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 중점영역 연구 결과 보고서.
- 옥선화·장경섭·최연실·성미애·진미정·이재림·강은영(2011). **가족정책기초연구**. 여성가족부 정책보고서.
- 윤홍식(2011). 왜 사회정책은 가족정책을 필요로 할까?-가족정책, 사회정책의 새로운 역할-. 2011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43-68.
- 이광자(1988).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도시 중산층 핵가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원·김현주·최선희·함인희·김선영(2002). **한국가족의 현주소**. 서울: 학지사.
- 장경섭(1994). 가족과 정치생활.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가족**

- 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 장경섭(2011).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 한국의 개발자
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2011 한국사회정책학회 춘
계학술대회자료집. 1-22.
- 장지연(2009). 한국 사회 젠더레짐과 복지국가의 성격. 한국복
지국가성격논쟁II(정무권편) 493-546. 서울:인간과 복지.
- 장현섭(1994). 가족의 미래.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 전병유(2009).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복지국가의 형성. 한국
복지국가성격논쟁II(정무권편) 415-444. 서울:인간과
복지.
- 조희금 · 김경신 · 정민자 · 송혜림 · 이승미 · 성미애 · 이현아
(2010). 건강가정론. 서울:신정출판사.
- 조희금 · 송혜림 · 이승미 · 라휘문 · 박세경 · 이현아 · 박충훈
(2011). 가족정책 성과평가 및 가족정책 과제개발. 여성
가족부 정책보고서.
- 주재선(2006).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통계분석 06-13. 한국
여성개발원.
- 최봉영(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1, 2.** 서울: 도서출판
느티나무.
- 한국여성노동연구소(2006). 산전후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 복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 Cho, C.(1997). The study of the bilateralization of Kore-
an kin relationship. *Korean Women Studies*, 13(1),
87-114.
- Cho, S.(2006). Challenge of the aging society and fami-
lial support for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Popu-
lation Studies*, 29(3), 139-157.
- Choi, H.(2006). Social support for grandparent-headed
families and its effects on grandparent caregivers'
physical and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Popu-
lation Studies*, 29(2), 115-142.
- Choi, H.(2009). Study on custodial grandparents based
on Sen's human capability paradigm. *Korean Jour-
nal of Population Studies*, 32(3), 103-126.
- Choi, H.(2010). Study on depression of custodial grand-
children: Does sex make any difference?. *Mental
Health & Social Work*, 36, 135-163.
- Choi, Y.(2006). The Phenomenon of "Geese-families": Ma-
rital separation between Geese-fathers and Geese-
mothers. *Family and Culture*, 18(2), 37-65.
- Choi, Y., & Sung, M.(2011). The Low Carbon & Green
Growth Policy and Green Life-Style, The Practical
Implication and Vision on Family. *Journal of the Ko-
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1), 79-91.
- Chung, O., Chung, S., Kim, K., & Park, Y.(2007).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family values and pa-
rental role responsibility among three generations.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2(2), 215-249.
- Han, G., & Yoon, S.(2004). The bilateralization of the
kinship relation in Korean families: Focused on the
intergenerational exchange. *Korean Journal of Popu-
lation Studies*, 27(2), 177-203.
- Hyun, E., & Rah, J.(2009). Difficulties of immigrant wo-
men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In raising chil-
dren and needs for adaptation program.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3), 675-687.
- Jeong, J.(2007). Contact frequency and social supports
among Korean kin: From the comparative per-
spective.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0(3),
157-178.
- Kang, J.(2009). Korea's policy on single-parent household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Health and Social Wel-
fare Review*, 29(2), 30-54.
- Kim, C., & Yoo, S.(2009). The investigation of the level
of satisfaction towards life of the elderly: Focu-
sing on the difference according to one's personal
background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5(4),
51-73.
- Kim, D., Park, S., & Kim, S.(2010). The influence of us-
ing of long-term care service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family care-givers: A com-
parison of leisure activity. *Journal of Korea Associa-
tion of Family Relations*, 15(3), 117-135.
- Kim, H.(2008). The duality of family changes in Korea.
The Journal of Asian Women, 47(2), 7-37.
- Kim, H., & Un, S.(2007).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p-
ing strategies of the 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men: A case study of Philippine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5, 33-66.
- Kim, H., Byun, H., & Yoon, H.(2008). Women's divorce
and poverty: Focusing on the changes in occupa-
tions and incomes. *Journal of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20(2), 37-63.
- Kim, H., Won, S., & Choi, S.(2011). Experiences of dis-
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amining the medi-
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Korea Asso-*

- ciation for Social Welfare Studies, 42(1), 117-149.
- Kim, K., Chung, M., Song, H., Sung, M., & Park, C.. (2008). A delphi survey for seeking progress in family policy : Focusing on integrated family policy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6), 167-179.
- Kim, M.(2010a). A study on community members' cultural sensitivity about immigrant wives. *Journal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1), 69-86.
- Kim, M.(2010b).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low fertility and fertility polici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19(2), 105-129.
- Kim, Y.(2007).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elderly care work hours and stresses in care work among family caregivers. *The Women's Studies*, 72, 31-72.
- Kwon, H., Kim, Y., Kwon, S., Park, S., Ahn, Y., Oh, G., & Lee, K.(2011).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childbirth as a challen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 175-200.
- Kye, S., Kang, H., & Chung, M.(2009). The Study on the marital life factors for the multi-culture families: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multi-culture family in Yongsan-Gu.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3), 31-57.
- Lee, H.(2008). An estimation of the economic impacts of divorce. *Family and Culture*, 20(1), 161-185.
- Lee, J.(1999). Modern transformation of Korean Family: Feminist analysis. *Korean Women Studies*, 15(2), 55-86.
- Lee, S., & Kim, S.(2011). A basic study on public nanny service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strateg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4), 51-65.
- Lee, S., Lee, K., & Lim, C.(2009).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parenting behavior of grandparents. *Journal of Korean Family Welfare Association*, 14(4), 57-77.
- Ok, S., Sung, M., & Shin, K.(2000). A study on the family and kinship value in urban and rural families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9), 1-20.
- Park, J., & Lee, J.(2010). Differential gender effects of family disorganization on the health and quality of lif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0(1), 142-169.
- Park, K.(2007). Meaning of the discourses of filial piety law in a moral and political economy. *Family and Culture*, 19(3), 31-52.
- Park, Y.(2007). Care workers' needs and the long term care policy for the elderly.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3(1), 27-56.
- Seo, H., & Kim, Y.(2009). A qualitative study about the care-giving experiences of grandparents and their social service need.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4(1), 267-296.
- Shin, K.(2010). The isolation and the mutual understanding in narratives of elderly care : Before and after the long term care policy. *Family and Culture*, 22(4), 63-94.
- Sohn, S.(2009). Socialization of adolescent children in Korean families : parental expectations and involvement. *Studies on Korean Youth*, 20(1), 57-84.
- Sohn, S.(2010). A comparative study of attitudes in educating children between Korean mothers and Japanese mothers: Evaluation of own culture and foreign Culture by Those Who Lived in Both Countries. *The Women's Studies*, 79, 37-80.
- Song, D.(2006).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for single mothers with dependent children and alternative empowerment approach. *Journal of Korean Family Association*, 11(1), 131-154.
- Suh, K., & Chun, K.(2009). The moderat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family caregivers' burdens and health and quality of life with demented pati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5(3), 339-357.
- Sung, M.(2006). Bilateralization phenomena in Korean families: A qualitative approach.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3), 59-72.
- Sung, M., & Chin, M.(2009). Work and family balance of low-income single mothers from the perspective of parental right. *Family and Culture*, 21(3), 1-28
- Yang, S.(2008). A qualitative study on the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towards international marriag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4, 37-60.
- Yoon, H., & Yoo, H.(2006). Influences of family relations on the successful aging.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8, 5-31.

접수일 : 2012년 07월 15일

심사일 : 2012년 08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19일